

## 대외협력홍보위원회 규정

제정 2013. 02. 28 개정 2018. 10. 29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동대학교의 대외협력홍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고, 조사·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동대학교 “대외협력홍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, 또는 심의한다.

1.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(지역사회협력위원회 소관사항을 제외한다) (개정 2018. 10. 29.)
3. 대내외 홍보활동 방안의 강구와 조정에 관한 사항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위원회는 대외협력홍보에 관한 사항을 조사, 연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7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며, 그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1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8조(소관부서 및 업무관장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는 홍보실에서 주무한다.

제9조(재정)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필요시 별도의 세부사항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